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015. 2. 27

코리아리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확인서]

본인은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54조에 따라 작성된
본 연차보고서가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2월 27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원종규 (서명)



목 차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다. 관련 규정	
2. 이사회	4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나) 정관변경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사) 내부통제 기준 수립·평가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자) 경영승계업무	
(차) 기타	
나. 구성(이사)	
(1) 총괄	
(2) 구성원	
(3) 요약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 회의 개최내역	
라. 평가	

- (1) 이사회 평가
-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3

- 가. 권한과 책임
-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 다. 구성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 (2) 회의 개최내역
 - (3) 평가(은행에 한함)
-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 (가) 후보자 성명
 - (나) 후보자의 인적사항
 - ① 출생연도, ② 출신학교, ③ 경력, ④ 사외이사 경력
 - (다) 후보제안자
 -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② 후보자와의 관계
 - (라) 후보자 추천이유
 -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② 후보자 추천 경로
 - (마) 금융회사등과 관계
 - (바) 자격충족 여부
 - ① 소극적 요건,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④ 본인 소명
 - (사) 사외이사 평가결과
 -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3) 후보군 현황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24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2) 비상계획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②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3) 후보군 현황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5. 감사위원회

26

가. 역할(권한과 채무)

(1) 총괄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마) 기타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 (1) 총괄
- (2) 구성원
- (3)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 (가) 권한과 책임
 - (나) 추천절차 개요
 - (다) 추천위원회 구성
 - (라) 활동내역
 - (마) 후보추천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 (2) 회의 개최내역

라. 감사보조조직 등

6.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33

가. 권한과 책임

- (1) 총괄
- (2) 구체적 역할
 -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제44조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바) 기타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 (1) 총괄
-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2) 회의 개최내역

(3) 평가(은행에 한함)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 보상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2) 변동보상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9) 임직원 총보수

7. 위험관리위원회

47

가. 역할(권한과 책무)

- (1) 총괄
- (2) 구체적 역할
 -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 (마) 기타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 (1) 총괄
- (2) 구성원

다. 활동내역 및 평가

- (1) 활동내역 개요
- (2) 회의 개최내역
- (3) 평가(은행에 한함)

8.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51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마. 임원책임보상보험 현황

바. 사외이사 평가

- (1) 평가 개요
 - (2) 내부평가
 - (가) 내부평가 개요
 -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① 총론,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 (3) 외부평가
 - (가) 외부평가 개요
 -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9. 주주총회	59
가. 주주현황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61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61
※ 별첨 1. 정관	
2. 이사회규정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이하 '코리안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코리안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신규선임, 연임 및 해임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14년말 현재 사내이사 4인 및 사외이사 5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14년말 현재 학계 출신 2인,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출신 2인, 경제전문가 1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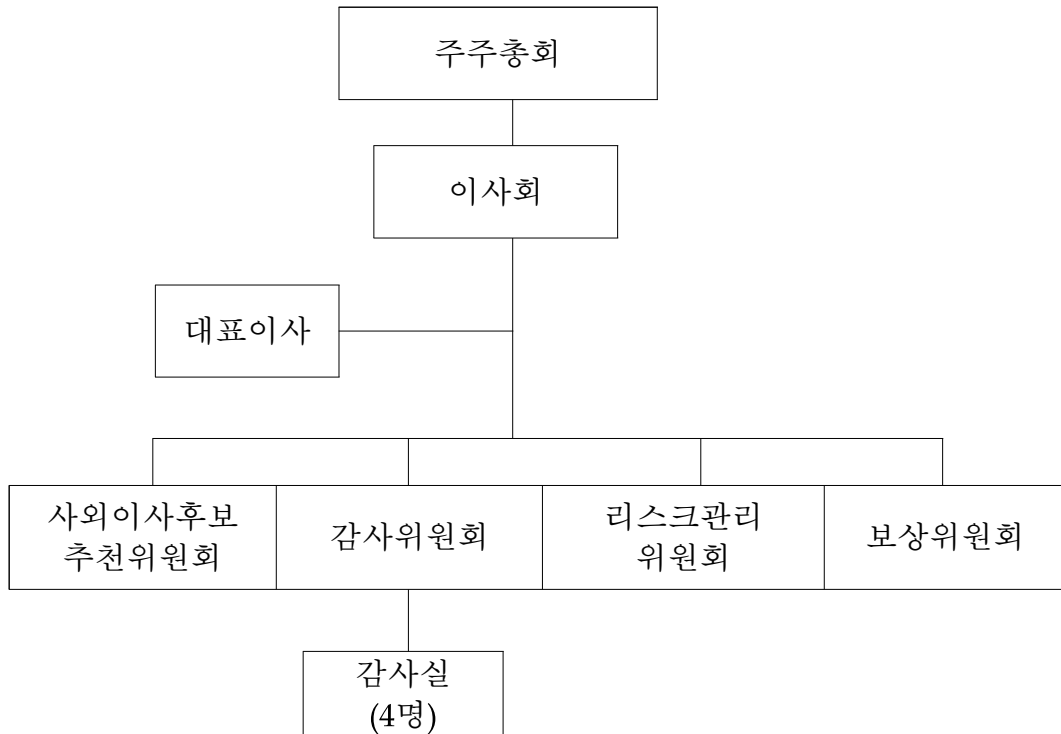
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회사의 정관은 사업 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상황을 당사 홈페이지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리 : <http://www.koreanre.co.kr>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구분	사내이사	사외이사	총 구성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명	2명	3명
감사위원회	1명	2명	3명
리스크관리위원회	-	3명	3명
보상위원회	-	3명	3명

(2) 지배구조의 특징

코리안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등 관련법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회회장의 임면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사회회 견제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경영성과 평가 개선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의 효율적 감독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제도의 설계, 운영, 지급 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	5/9	원혁희(상임)	정관 이사회규정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2/3	장병구(사외)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칙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등	2/3	한택수(사외)	정관 감사위원회규칙
리스크관리 위원회	전사 리스크관리	3/3	양희산(사외)	리스크관리위원 회규칙
보상위원회	경영진 성과보상 제도 운영	3/3	장병구(사외)	보상위원회규칙

다. 관련 규정

- 첨부1. 코리안리 정관
- 첨부2. 코리안리 이사회 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코리안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코리안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 및 집행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코리안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9조)

이에 따라 '15년 경영목표·전략은 '14.10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14.12월 개최된 '14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세후 당기순이익 1,700억원의 '15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나) 정관변경

코리안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합니다(상법393조의2 ②, 이사회규정 제9조1의(2))

이에 따라 '14년2월 개최된 14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변경안을 의결하였으며, '14년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 발효되었습니다.

- 아 래 -

- o 주요 내용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개정
- o 변경 목적 :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 정관 반영

(다) 예산 및 결산승인

코리안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제9조1의(3), 제9조2의(12)).

이에 따라 '15년 예산은 '15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14.12월 개최된 14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으며, '15년 사업비 예산은 917억원으로 '14년 가결산 사업비 892억원 대비 2.8%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년 2월 개최된 결산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14년 결산(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 1,167억원
- 총자산 : 85,862억원
- 배당 : 258억원 (현금배당률 4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코리안리 이사회는 점포의 설치, 이전 및 폐쇄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이사회규정 제9조2의(9)). 이 뿐 아니라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의 중대변경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9조2의(4)).

향후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마)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코리안리 이사회는 지난 1년간 이사회회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등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회사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통제규정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해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내부통제기준 수립·평가

회사는 보험업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법령의 준수, 자산운용의 건전성 유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할 절차와 기준으로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규정은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체계, 행동규범,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및 준수점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로 이루어지며 규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산하 전담조직의 운영 및 부서별 준법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연 1회 이상 내부통제 자율규제 평가를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감사위원회는 그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이사회규정 제12조(위임)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리스크관리 관련 제반 업무집행에 대해 감독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코리안리는 '14년 3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회기 리스크한도 설정 및 2014회기 파생상품 운용 전략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5월, 7월 9월에 개최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출재계약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 리스크관리 규정 개정 등을 보고하였으며 12월에 개최된 동 위원회에서는 2015회기 주요 경영전략 심의 및 리스크허용한도 설정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자) 경영승계업무

코리안리 이사회는 2015회기중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하고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점검할 계획입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코리안리 이사회의 총원수는 3명이상 12명 이하로 제한됩니다(정관 제18조). 단, 사외이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회사의 자산규모, 보험업의 특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중요사항들을 적절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4년말 현재 이사회는 회장, 대표이사 사장, 사내이사 2명(상근감사위원 1명 포함) 및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년 3월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명의 사내이사가 3년의 임기로, 3명의 사외이사가 1년의 임기로 연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이 가능하지만,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연임시 1년 이내로하며 최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정관 제19조)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8조).

이사회 의장으로는 원혁희 회장이 '14년 3월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선임(임기 1년, 연임 가능)되었습니다.

(2) 구성원 정보 요약

(2015.2월 기준)

성명 / 직위	담당업무 / 주요경력	임기	재임기간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원혁희 회장	이사회회장 풍림산업 사장	'07.6.14~ '15.3.주총	92개월	-
원종규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장 코리아리 전무('11.6~'13.6)	'12.6.13~ '15.6.12	32개월	-
최용수 사내이사	상근감사위원 금감원 공보실 국장('07.9~'09.2)	'09.6.12~ '15.6.12	68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이필규 사내이사	現보험신보 회장('88.3~)	'99.5.27~ '17.3.주총	188개월	-
강영기 사외이사	現대전대 교수('13.9~)	'11.6.10~ '15.3.주총	44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장병구 선임사외이사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09.7~'12.6)	'12.6.13~ '15.3.주총	32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양희산 사외이사	現전주대 교수('91~)	'12.6.13~ '15.3.주총	32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택수 사외이사	국제금융센터 이사장 ('08~'14.5) 現창조경제연구원 이사장 ('09.9~)	'13.6.14~ '15.3.주총	20개월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권처신 사외이사	한화손보 대표이사 ('10.2~'11.4)	'13.6.14~ '15.3.주총	20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4년에는 총 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76%입니다. 그 중 양회산 이사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참석률이 88%에 달하여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안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지난 한해 30건의 의결안건이 모두 가결되었고 21건의 보고안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4년도 제1차 이사회 : 1.28(화) 11:00 [안전 통지일 : 1.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가재환	강영기	장병구	양회산	한택수	권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가재환	강영기	장병구	양회산	한택수	권처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5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두바이주재사무소 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4년도 제2차 이사회 : 2.25(화) 11:00 [안건 통지일 : 2.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가재환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가재환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제5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이사 퇴직금기준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제52기 정기주주 총회 소집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4년도 제3차 이사회 : 3.14(금) 11:05 [안건 통지일 : 3.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이사회회장 및 회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이사보수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집행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4년도 제4차 이사회 : 5.15(목) 9:30 [안건 통지일 : 5.1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치신	
2. 참석여부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코리아리투자자문 매각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4년도 제5차 이사회 : 6.13(금) 11:00 [안건 통지일 : 6.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치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직제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코리아리투자자문 청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내부통제기준 개정건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사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14년도 제6차 이사회 : 9.25(목) 11:05 [안건 통지일 : 9.24]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Best Re사 미수 채권 회수를 위한 중재 및 소송 진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로이즈 현지법인 설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퇴직보진상여금제 도폐지 및 일시보 상에 따른 사업비 예산 증액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성과보상체계 개편 및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제규정 일부 변경 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사) 제2014년도 제7차 이사회 : 12.18(목) 11:05 [안건 통지일 : 12.1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1. 이사 성명	원혁희	원종규	최용수	이필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2015회기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가결

라.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출석률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공정성, 전문성 등 활동평가와 기업과 주주 등을 위한 의사결정 노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과 업무에 대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이사회 구성,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굴 및 관리하여 해당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나.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요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 및 적극적 요건을 반영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동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원칙을 제정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등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비후보자를 추천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임을 포함하여 신규 선임시에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위원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검증된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명	구분	現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장병구	사외	위원장	'13.5.29~'15.3.주총일	딜로이트안진 부회장
강영기	사외	위원	'12.9.25~'15.3.주총일	현대전대 교수
최용수	상임	상근감사위원	'09.9.12~'15.3.주총일	금감원 공보실 국장
가재환	사외	舊위원장	'12.6.13~'14.3.14	현대평양 고문변호사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지난 2014회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3인에 대해서 2014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평가결과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전원의 승인 하에 재추천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년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4년 2월 25일 10:40

[안전통지일 2014년 2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가재환	강영기	장병구	최용수		
1. 이사 성명	가재환	강영기	장병구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 : 없음						
4. 의결(심의)안건						
사외이사후보 추천 : 강영기	찬성	의결권 제한1)	불참	찬성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 : 장병구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 : 양희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가결	

1) 사외이사 본인의 후보 추천건으로 가부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나) 2014년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4년 9월 25일 10:50

[안전통지일 2014년 9월 2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강영기	장병구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 : 없음				
4. 의결(심의)안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사외이사 후보 추천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개요

사외이사 후보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중 강영기 사외이사는 2011년부터, 장병구, 양희산 사외이사는 2012년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2014년 2월 25일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위원 4명중 3명이 참석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위 3명을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안전을 결의하였고 2014년 3월 14일 개최된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

(가) 후보자 인적사항

[강영기]

① 출생연도 : 1957년

② 출신학교 : 1976 대전고 / 1981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
1983 연세대 경영학 석사 / 1998 연세대 경영학 박사

③ 경력

- 1984 ~ 1989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정보산업연구부 연구원
 - 1989 ~ 1997 삼성경제연구소 전자정보산업실 실장
 - 1998 ~ 2010 삼성전자 본사 경영기획팀장 전무
 - 2010 ~ 2010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총괄지원실 실장
 - 2010 ~ 2013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 2013 ~ 현재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11.6월 10일 ~ 현재('14.12월말 기준)
- 이사회 참석횟수 : 19회/21회 (90.5%)
-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 10회/11회(90.9%)

[장병구]

① 출생연도 : 1946년

② 출신학교 : 1964 경기고 / 1969 서울대 경영학 학사 /
1978 서울대 경영학 석사

③ 경력

- 1969 ~ 2000 한국외환은행 (부행장 1999 ~ 2000)
 - 2000 ~ 2009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
 - 2009 ~ 201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12.6월 13일 ~ 현재('14.12월말 기준)
- 이사회 참석횟수 : 13회/15회 (86.7%)
-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 11회/11회(100.0%)

[양희산]

① 출생연도 : 1952년

② 출신학교 : 1969 원광고 / 1974 서울대 교육학 학사 /
1986 서울대 경영학 석사 / 1992 경희대 경영학 박사

③ 경력

- 1978 ~ 1991 보험감독원
- 1991 ~ 현재 전주대학교 교수
- 2007 ~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없음

④ 사외이사 경력

- 근무기간 : '12.6월 13일 ~ 현재('14.12월말 기준)
- 이사회 참석횟수 : 10회/15회 (66.7%)
-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횟수 : 7회/10회(70.0%)

(나) 후보제안자

①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강영기 사외이사 후보제안자 : 최용수

2009년 6월 ~ 현재 코리안리 상근감사위원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2007년 9월 ~ 2009년 2월 前 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

장병구 사외이사 후보제안자 : 가재환

2011년 6월 ~ 2014년 3월 前 코리안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999년 ~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양희산 사외이사 후보제안자 : 강영기

2012년 9월 ~ 현재 코리안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0 ~ 2010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총괄지원실 실장
2010 ~ 2013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2013 ~ 현재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②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제안자들과 후보자들은 이사회를 같이 참석하고 있으나 업무상 다른 관계는 없으며 기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이유

①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강영기 사외이사 후보자는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갖춘 학계 출신 인사로서 금융 및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 운영시 회사의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받았습니다.

장병구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외환은행 부행장,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 및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출신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받았습니다.

양희산 사외이사 후보자는 보험학 교수로서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회 운영시 회사 중요 의사결정에 심도 깊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받았습니다.

② 후보자 추천 경로

각 후보자는 기존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과 전문성 등을 근거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등과 관계

①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② 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③ 임원과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①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보험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 평가 : 위반사항 없음

② 금융회사가 정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통해 관련법규에 의한 자격요건의 충족은 물론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③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 전문성

당사는 2012년부터 사외이사모범규준을 준수하여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등 전문성 요건을 반영하여 운영해왔습니다. 2014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이후 2015년 2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개정하여 동 내용을 반영하고 사외이사 선임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14년에 연임 추천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학계 출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직무공정성

당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공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연임 추천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사외이사 후보자들은 당사와의 거래 관계가 없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없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㉔ 윤리성, 책임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자의 윤리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는 해당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고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㉕ 충실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대상자의 충실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는 당사의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참석 및 의안에 대한 사전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본인 소명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본인들의 서명을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 자격확인심사표,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소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평가 결과

당사는 이사회 지원부서(기획관리실) 및 사외이사가 각각 이사회가 정한 평가서를 활용하여 매 결산기 종료후 사외이사의 활동결과를 평가하며,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로 사외이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서의 항목은 주주의 이익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등 기본 역할과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및 기여도 등의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후보자는 전반적인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연임 추천하였습니다. 각 이사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사외이사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각 사외이사들의 재임기간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2014년 3월 주총 종결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3인의 이사들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결과

당사는 2014년 2월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당사가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3명이 참석하였고 본인 추천건에 대한 의결권을 제외한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바. 사외이사 재임여부

2014회기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이중 3명이 연임하였으며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율	평가 여부
가재환	'10.6.11~'14.3.14	-	-	실시
강영기	'11.6.10~	2년 연임	93.8%	실시
장병구	'12.6.13~	1년 연임	80.0%	실시
양희산	'12.6.13~	1년 연임	80.0%	실시

※재임기간 및 참석율은 최초 선임 이후 2014년 정기주주총회일 기준임

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주요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추천된 이들 중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부의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 (3) 후보군 현황

현재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회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에는 후보군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 관련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자.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 지원부서 : 기획관리실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팀장급 1명, 대리급 1명 (이사회 담당자)
- 지원내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2015회기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4년 12월 24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는 정관에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절차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영승계 사유 발생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절차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후보자가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후보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부의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유고시 정관상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해당사항 없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당사는 2015회기 중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마련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점검 내역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 현황

당사는 2015회기 중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5.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코리안리재보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며,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1명의 상근감사위원 및 2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의 실질적 역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은 감사, 회계업무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 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14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를 거쳤 고 약 16%는 사전심의를,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거쳤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이에 따라 '14년 1월 소집된 '14년도 1차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52기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재무담당 집행임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부회계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고, 한영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이 '14년도 1차 감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회사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 4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4년 2월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전문성 및 대외공신력 등을 감안하여 대형회계법인 중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감사위원회 규칙 제17조)

1. 감사계획수립,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현지법인에 대한 조사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7. 기타 내부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코리안리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외감법 시행령 제7조)

검토결과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등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해당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사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습니다.(감사위원회 규칙 제19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14년 1차 감사위원회(2월개최), 4차 감사위원회(9월개최)에서 준법감사인으로부터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특히 4차 위원회에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내부기준 보안과 보안시스템 정비 등 일부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미흡하다 보고 받고 하반기까지 해당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 하며, 다음 각 1호의 1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변호사, 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계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법학 또는 상경계열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기관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상기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아울러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코리안리 감사위원 3명은 상기 자격을 충족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한택수	사외	위원장	'13. 6. 14.	'15. 3. 주총일
최용수	상임	상근감사위원	'09. 6. 12.	'15. 6. 12
장병구	사외		'14. 3. 14.	'15. 3. 주총일

(3)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14년에는 재적 감사위원의 100%참여 하에 총 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 심의 및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전 감사위원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감사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안전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어,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가 가능했으며, 그 결과 지난 한해 14건의 보고 및 의결안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4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14.2.25(화) 10:20, 안전 통지일: 2.2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가재환	한택수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52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보고 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3회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결과 이사회 보고 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13년도 하반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4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14.3.14(금) 10:00, 안전 통지일: 3.11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한택수	장병구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14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14.6.13(금) 10:30, 안전 통지일: 6.10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한택수	장병구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라) 제2014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14.9.25(목) 10:30, 안전 통지일: 9.22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한택수	장병구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감사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4년도 상반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14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14.12.11(목) 11:30, 안전 통지일: 12.8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한택수	장병구	최용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라. 감사보조조직 등

감사보조조직으로는 감사위원회 산하 감사실이 있으며, '14년12월기준 감사실장 외 3명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14.02.25	감사위원회	2013회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14.02.25	감사위원회	2013회기 내부감사 결과
'14.06.13	감사위원회	2014회기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14.09.25	감사위원회	2014회기 6~9월 내부감사 결과
'14.12.11	감사위원회	2014회기 9~12월 내부감사 결과
'14.01.09	상근감사위원	과생상품 운용실태 점검 결과
'14.01.15	상근감사위원	2013회기 결산 예비 감사 결과
'14.02.07	상근감사위원	명령휴가제도 및 순환배치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14.02.20	상근감사위원	2013회기 결산 감사 결과
'14.03.04	상근감사위원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
'14.03.17	상근감사위원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특별감사 결과
'14.04.09	상근감사위원	리스크관리팀 종합감사 결과
'14.04.30	상근감사위원	인장 관리 실태 점검 결과
'14.05.15	상근감사위원	재보험 출재선 관리 실태 점검 결과
'14.05.29	상근감사위원	뉴욕주재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14.09.22	상근감사위원	대주주 등과의 거래 실태 점검 결과
'14.11.28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반복 검사지적사항 자체점검 결과
'14.12.31	상근감사위원	보안 관리 실태 불시점검 결과
'14.12.31	상근감사위원	공시업무 처리실태 점검 결과
'14.12.31	상근감사위원	2014회기 결산 예비 감사 결과

6. 보상체계 및 보상위원회

가. 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리스크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보상을 지양함으로써,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보상체계를 수립·운영하는 것을 보상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상기 보상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를 설계·운영시 법규 등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사회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3년 9월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상위원회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보상위원회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당사는 성과보상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 2월 개최한 2015회기 제1차 보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성과보상체계의 적용대상 범위가 업무권한과 책임에 상응하게 설계되어 있고, 임원 보수의 상당부분이 변동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보상의 상당부분(60%)이 3년간 이연지급되도록 설계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는 2014년 9월 개최한 2014회기 제2차 보상위원회와 2014회기 제6차 이사회에서 성과보상체계의 평가지표별 적정성을 점검하여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당기순이익 금액과 수재보험료 성장률에 근거했던 평가 기준을 지표별 목표달성률에 연동하도록 개편하여 보상체계가 재무상황에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평가지표 중 리스크와 연계한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의 적용방식과 비중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 2월 개최한 2015회기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현재 당사 성과보상체계의 평가지표가 회사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지급여력비율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변동보상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변동보상의 지급 형태 및 방식, 현금보상 지급, 보상체계 재조정 등 경영진에 대한 보상정책과 운영 전반에 걸쳐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 금융회사의 보상체계가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상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사 보상위원회는 2015년 2월 개최된 2015회기 제1회 보상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 경영진, 특정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제44조에 따른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칙』 제7조 제4호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

조 모범규준에서 정의하는 경영진 및 특정업무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개최한 2013회기 제1차 보상위원회에서 최초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상근 등기이사과 비등기 집행임원으로 결정하였고 2014년 9월 개최한 2014회기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상무대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변동보상의 대상인 경영진으로는 회장, 사장, 상근감사위원 등 상근 등기이사 3명, 전무, 상무, 상무대우 등 집행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경영진 등	8명	회장, 사장, 상근감사위원, 전무, 상무, 상무대우
특정직원	0명	-

(마) 보상위원회 보상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회사내 모든 부서에 적용
- ② 해외: 해당사항 없음

나. 구성(보상위원회위원)

(1) 총괄

보상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상체계가 부여하는 성과보상 평가시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보상체계에 리스크 관리측면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총 3인(장병구, 권처신, 한택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이 사외이사로서 보상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병구 이사는 한국외환은행 부행장,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이사, 델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권처신 이사는 삼성화재 애니카서비스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한택수 이사는 재정경제원 공직과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을 역임하였는바 보상위원회 위원 전원이 금융 및 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 중 권처신 이사는 현재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바, 보상위원회는 보상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 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장병구	사외이사	위원장	2013. 9. 27	2015. 3월 주총일
권처신	사외이사	위 원	2013. 9. 27	2015. 3월 주총일
한택수	사외이사	위 원	2014. 3. 14	2015. 3월 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4년에는 총 2회의 보상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83%로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회기중 주요한 활동내역으로는, 2014년 9월에 소집된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이 변동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성과보상기준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4회기 제1차 보상위원회 : 2014.3.14(금) 10:30 (안건 통지일 : 3.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장병구	권처신	한택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원안대로 접수
4. 의결안건				
2013회기 성과보상 평가 결과 변동보상 지급을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1) 보고안건 : 2013회기 금감원 RAAS 비계량평가 검사 결과 보고

(나) 2014회기 제2차 보상위원회 : 2014.9.25(목) 09:30 (안건 통지일 : 9.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장병구	권처신	한택수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3. 보고안건 ¹⁾ 에 대한 의견	-			-
4. 의결안건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	찬성	가결
2. 변동보상제도의 적용대상 변경	찬성	-	찬성	가결
3. 성과보상기준(변동보상체계) 개편 ²⁾	찬성	-	찬성	수정결의

주 1) 보고안건 : 2013회기 금감원 RAAS 비계량평가 검사 결과 보고

2) 결의안건 : 3. 성과보상기준(변동보상체계) 개편

- 비계량 평가 절차 일부 수정결의 / 기타내용 원안대로 의결

라. 보상위원회 및 보상체계 관련 주요사항

(1) 보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보상위원회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위원회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상위원회의 보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보상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장병구 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소집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2014년도 결의사항은 모두 가결되었고 그 중 1건은 수정결의 되었습니다.

(3)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상위원회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보상위원회가 회사에 외부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4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 보상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14년 9월에 소집된 제2차 보상위원회 및 제6차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존 변동보상제도와 성과급 제도로 이원화 되어있던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변동보상제도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익성과 지속성 지표를 목표달성율에 연동하도록 하였으며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경영성과에 대하여 비계량 평가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임원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이 변동보상이 되도록 하는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성과보상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5)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현황

당사의 리스크관리 부서는 리스크관리팀이며, 준법감시 부서는 준법감시팀입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각각 8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팀의 경우 해당 업무 평균 근속연수는 1.4년, 준법감시팀의 경우 2년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는 전문 역량을 갖춘 경력직 인력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각 부서는 해당 업무의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상체계의 독립성

리스크관리팀 및 준법감시팀 직원들의 경우 부서 및 개인 목표 설정시 당기순이익 등 회사의 계량적인 성과가 아닌 고유직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서평가 및 개인 연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 보상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성과보상체계의 적용 대상인 경영진은 회사가 가입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외에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과 관련한 보험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8) 일반직원의 보상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자 이상 직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의식 공유 및 동기부여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율에 연계한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2014년 노사합의에 의하여 과거 이원화 되어 있던 성과급체계를 일원화하였고 성과달성 기준을 금액에서 목표달성률 기준으로 합리화 하였으며 정기상여금 및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임금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 보상체계의 주요 특성

(1)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① 보상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주요 리스크

당사는 성과보상체계가 높은 보상을 위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하며, 회사에 필요한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성, 지속성, 건전성 성과지표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주요 측정지표

1. 수익성 지표 :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률
2. 지속성 지표 : 수재보험료 성장률 목표 달성률
3. 건전성 지표 : 전년대비 RBC비율 상승률

③ 동 측정지표에 의한 주요 리스크 측정결과

당사는 건전성 지표와 관련하여 RBC비율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RBC 비율은 직전연도말 208.7% 대비 1.1% 감소한 206.3%였고, 2014년도말 RBC 비율은 현재 결산실적과 연동하여 작성중에 있습니다.

④ 동 측정결과와 보상의 연계방법

상기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률, 수재보험료 성장률 목표 달성률 및 RBC 비율 상승률 등 계량지표는 경영진의 경영성과 지표로 직접 반영되고 있으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영성과 평가요소들은 비계량 평가에 의한 지급률 조정으로 보상체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⑤ 동 측정지표와 회사 전체 리스크관리 체계의 연계방법

당사의 성과보상체계에 반영된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은 당사 리스크관리의 핵심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①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지속성 지표(수재보험료 성장률 목표달성률), 건전성 지표(전년대비 RBC 비율 상승률)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로는 외부기관(신용평가사, 감독당국 등) 평가결과 등 비계량 평가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경영진의 경우 회사전체 성과(당기순이익, 수재보험료, RBC비율 등)를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상의 연계방법

경영진의 경우 회사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인 당기순이익, 수재보험료, RBC비율 등을 활용하여 성과보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성과미달시 보상을 조정하는 방법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이연지급 해당연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측정한 변동보상 지급률 점수대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이연지급액을 30%~100%까지 축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①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추가연계 방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장기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이연된 보상액 또는 지급된 보상액에 대한 조정정책

변동보상액 중 이연된 보상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경영성과가 반영된 주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변동보상 대상자가 회사경영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미지급된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 이연지급액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연보상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변동보상액 결정시 이연보상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확정되며 이를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지급 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최종 지급률이 확정될 때 보상액의 조정이 없으면 기 설정해 놓은 주식수에 해당 회계연도 말일자의 주식 증가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변경됩니다.

(4)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① 전체 보상액 중 고정보상액과 변동보상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상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임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상은 변동보상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변동보상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변동보상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상과 주가연계 방식의 보상으로 구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③ 변동보상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상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변동보상중 상당부분을 장기성과와 연동하기 위하여 1차년도는 현금, 2~4차년도는 주가연계 방식으로 이연 보상하고 있습니다.

④ 변동보상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가연계 방식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진 및 특정직원 보상에 관한 세부정보

(1)보상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고정보상액 ^{주2)}	변동보상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3년)	경영진	6	46	-	-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8	39	-	-
	특정직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경영진·특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고정보상’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변동보상’으로 분류. 전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는 집단 성과배분금액(PS)은 ‘고정보상’에 포함

주3) 전년도(2013년) 기간은 2013. 4. 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임.

(2) 변동보상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변동보상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
	특정직원	-	-	-	-

주) 2013년도는 변동보상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는 직전년도 성과평가가 현재 진행중임 (2015년 3월 20일 공시예정)

(3)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주) 2013년도는 변동보상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는 직전년도 성과평가가 현재 진행중임 (2015년 3월 20일 공시예정)

(4) 이연보상액의 보상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이전
		t기	t-1기	t-2기	t-3기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	-	-
	특정직원	-	-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	-	-
	특정직원	-	-	-	-	-	-

주) 2013년도는 변동보상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는 직전년도 성과평가가 현재 진행중임 (2015년 3월 20일 공시예정)

(5) 이연보상의 성과조정(해당년도 지급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상액			
		축소액	주가변동 반영	성과평가 등 반영	기타 환수금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
	특정직원	-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
	특정직원	-	-	-	-

주) 2013년도는 변동보상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는 직전년도 성과평가가 현재 진행중임 (2015년 3월 20일 공시예정)

(6)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7)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8)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상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보장성 상여금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3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당해년도 (2014년)	경영진	-	-	-
	특정직원	-	-	-

주)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보상액에서 제외

(9)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t-1)	비율 (A/B)		
전년도 (2013년)	238	1,814	13.1%	302	0.79
당해년도 (2014년)	작성 중 (2015년 3월 20일 공시예정)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함.

주3) 임직원 수(C)는 해당년도 말 재직자 기준으로 작성함.

주4)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3년은 2013.4.1.~2013.12.31. 해당금액임.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코리안리재보험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험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에 대한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등 위험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영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는 경영 활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및 자산 각 영역에 대한 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위험에 기반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2014회기에 파생상품 운용전략 심의, 주요 경영전략 심의, 리스크 한도 설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 재보험운영전략, 자산운용전략 등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회사가 인수 가능한 최대 위험량 및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출재하는 재보험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위험 전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보험 위험전가평가 결과(ERD)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점검을 위해 매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최악의 상황에서 감독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운용자산의 종목별 투자한도를 포함한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을 심의 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규 '자산운용 및 관리규정'에 종목별 손실에 따른 손절매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위험관리위원회는 자산 위험 관련 내부모형의 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손실 허용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회사의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위험관리규정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개정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실무기준은 보험/시장/신용/유동성/운영리스크 관리 지침, 지급여력비율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위험 점검 기준, 이상징후 거래사 업무처리 기준, 사전점검 기준, 위기상황 분석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변화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그 외 위험관리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상 리스크 관련 주요 이슈가 지속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양희산	사외	위원장	'14.3.14.	'15.3.주총일
강영기	사외	위원	'14.3.14.	'15.3.주총일
권처신	사외	위원	'14.3.14.	'15.3.주총일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위험관리위원회는 2014년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위원의 평균참석률은 80%입니다. 특정 위원의 건강상 이유로 3회 불참이 있었으나 참석한 위원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위원회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차례의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24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결의사항은 11건, 보고사항은 13건이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4년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4.03.14(금) 09:40

[안전 통지일 : 2014.03.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양희산	강영기	권처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리스크한도 관리체계 개선(안)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4회기 리스크한도 설정(안)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4회기 파생상품 운용 전략 심의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대체투자 및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불참	찬성	찬성	가결
2013 하반기 리스크관리 자율규제 평가결과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4년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4.5.15(목) 09:00

[안전 통지일 : 2014.5.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양희산	강영기	권처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없음				

(다) 제2014년도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4.7.14(월) 11:00

[안전 통지일 : 2014.7.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양희산	강영기	권처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불참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나. 투자심의위원회 신설(안)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다.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불참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14년도 제4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4.9.25(목) 10:20

[안전 통지일 : 2014.9.2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양희산	강영기	권처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 없음				

(마) 제2014년도 제5차 위험관리위원회 : 2014.12.18(목) 10:00

[안전 통지일 : 2014.12.1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양희산	강영기	권처신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5회기 주요 경영전략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리스크관리시스템 측정 방법 및 절차 변경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5회기 리스크 허용 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8.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강영기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학 박사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의 거래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충족	2011년 선임 이후 누적 출석률 90.5%

(2) 사외이사 장병구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출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의 거래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충족	2012년 선임 이후 누적 출석률 86.7%

(3) 사외이사 양희산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보험학 교수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의 거래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충족	2012년 선임 이후 누적 출석률 66.7%*

* 2014.1~8월 병가로 인해 5회 이사회에 불참, 그 외 기간은 100% 참석

(4) 사외이사 한택수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제 전문가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의 거래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충족	2013년 선임 이후 누적 출석률 80.0%

(5) 사외이사 권처신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모범규준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출신
나. 직무공정성	충족	당사와의 거래관계 없음
다. 윤리책임성	충족	-
라. 충실성	충족	2013년 선임 이후 누적 출석률 90.0%

나. 사외이사 활동내역 및 보수

(가) 활동내역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사외이사는 '14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였으며,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보수

구 분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43,200천원	月 3,600천원*12개월
	상여금	7,200천원	月 3,600천원*2회(체력단련비)
	기타 수당	2,100천원	이사회 7회 100% 참석 기준 (1회 참가수당 : 300천원)
나. 보수 이외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건강검진 지원	2,400천원	종합검진 1회 기준 (본인 및 배우자 각 1,200천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다) 요약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상 위원회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개최	참여	실적
가재환*	2	2	1	1	-	-	1	1	-	-	4
강영기	7	6	-	-	5	5	2	2	-	-	14
장병구	7	6	4	4	-	-	2	2	2	2	15
양희산	7	2	-	-	5	2	-	-	-	-	4
한택수	7	6	5	5	-	-	-	-	2	2	13
권처신	7	6	-	-	5	4	-	-	2	1	11

* 2014.3.14자로 임기 만료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한택수	권처신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매분기별 실적 및 회사 주요현황 브리핑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12.9.25 / 재보험 이론, 재보험시장 개황, 당사 현황, 사업목표 및 중장기 Vision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	-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13.9.27 / 재보험 이론, 재보험시장 개황, 당사 현황, 사업목표 및 중장기 Vision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불참(출장)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2014.12.18 / 재보험 이론, 재보험시장 개황, 당사 현황, 사업목표 및 Vision 2050 등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시간	3	3	3	1	2

라.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음

마. 임원책임배상보험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상한도액 500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3년 이내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연임시 1년으로 제한하되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전문성, 충실성 및 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 담당부서, 이사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사외이사 본인과 이사회 담당부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설문서로,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로 사외이사를 평가합니다.

사외이사 본인 설문서의 평가항목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및 보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등 전문성, 공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1점에서 5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며, 이사회 담당부서의 평가서는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A·B·C의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매 결산기 종료 후 이사회 담당부서는 사외이사들에게 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서 항목에 의한 평가를 요청하며, 이사회 담당부서 역시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을 토대로 설문지 항목에 의한 평가를 진행하며 이사회는 지난 회계연도의 사외이사 이사회 출석률로 평가합니다.
-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① 총론

'14년도 코리안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 본인, 이사회 담당부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결과 모든 사외이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와 경영진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②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	충실성, 기여도	
강영기	A	A	A	A	-
장병구	A	A	A	A	-
양희산	A	A	A	B	주1)
한택수	A	A	A	A	-
권처신	A	A	A	A	-

주1) 양희산 이사의 경우 평가 기간 동안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완쾌되어 이사회에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참석의 충실성 및 기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3) 외부평가

외부 평가는 향후 적절한 외부평가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 이후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위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지원부서 : 기획관리실
- 조직구성 : 부서장(총괄) 1명, 팀장급 1명, 대리급 1명
- 지원내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및 관리 등

자.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강영기	'11.6.10	'15.3.20	42개월	사추위('12.9월~) 리스크위('14.2월~)	-	현 대전대학교수
장병구	'12.6.13	'15.3.20	30개월	사추위('13.5월~) 감사위('14.3월~) 보상위('13.9월~)	선임사외이사('14.3월~) 사추위원장('14.9월~) 보상위원장('14.9월~)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양희산	'12.6.13	'15.3.20	30개월	리스크위('12.6월~)	리스크위원장('13.9월~)	현 전주대학교수
한택수	'13.6.14	'15.3.20	18개월	감사위('13.6월~) 보상위('14.2월~)	감사위원장('14.3월~)	현 창조경제연구 원이사장
권처신	'13.6.14	'15.3.20	18개월	리스크위('13.6월~) 보상위('13.9월~)	-	한화손보 대표 이사

9. 주주총회

가. 주주현황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120,369,116주
- 자기주식총수 : 보통주 5,500,000주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보통주 보유현황

성명	관계	소유주식 수 및 지분율		의결권 제한범규
		주식수	지분율	
원혁희	본인	3,810,876	3.17%	상법 제54조의 12
장인순	친인척	6,641,957	5.52%	
원종익	친인척	4,241,966	3.52%	
원영	친인척	4,187,571	3.48%	
원종규	친인척	4,214,385	3.50%	
원종인	친인척	775,109	0.64%	
원계영	친인척	631,578	0.52%	
이필규	임원	2,707,633	2.25%	
계		27,211,075	22.61%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3% 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 각 주주별 지분 3% 제한

- 주주명부 기준 1% 이상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비율	회사와의 관계
원혁희외 6인	24,503,442	20.36%	최대주주
FIDELITY FUNDS	10,810,039	8.98%	없음
국민연금	8,213,679	6.82%	”
한국밸류자산운용	6,320,018	5.25%	”
SKAGEN AS	6,110,366	5.08%	”
KB자산운용	5,754,401	4.78%	”
코리안리재보험	5,500,000	4.57%	자사주
신영증권	4,015,823	3.34%	없음
이필규	2,707,633	2.25%	기타비상무이사
베어링자산운용	2,106,419	1.75%	없음
T.ROWE PRICE FUNDS	1,283,642	1.07%	”
NORGES BANK	1,251,867	1.04%	”

※ 주주명부 기준 외국인주주 지분율 합계 : 40.89%

연도 중 주주현황 변동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 개최 현황

구 분	2012년(제50기)	2013년(제51기)	2014년(제52기)
소집결의일	2012.5.25	2013.5.29	2014.2.25
소집공고일	2012.5.25	2013.5.29	2014.2.26
주총개최일자	2012.6.13(수)	2013.6.14(금)	2014.3.14(금)
개최장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 빌딩 12층 강당		
소요시간	30분	30분	32분
이사참석	11명	8명	7명

- 2014년(제52기) 주주총회 안건내용

안 건	내 용	찬반 비율(%)	
		찬성	반대
1호의안	제52기(2013.4.1~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주당 175원 - 주식배당 : 주당 0.02주	97.31	2.69
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주주총회 결의방법 변경(상법,표준정관반영)	99.95	0.05
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 이필규 - 사외이사 : 강영기, 장병구, 양희산	99.61	0.39
4호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장병구	99.94	0.06
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56억원 승인	100.00	-
6호의안	이사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의 건 - 퇴직금 산정 기초 항목 변경 및 산정방법 명확화	73.68	26.32

※ 찬반 비율은 주주총회 참석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 기준임
각 의안별로 예탁원에 웨도우 보팅을 신청하여 찬반 비율대로 산입하였음

10.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정 관

1963. 1. 29	제정	1963. 8. 16	개정
1969. 1. 19	개정	1969. 5. 30	개정
1973. 3. 8	개정	1976. 3. 9	개정
1978. 3. 2	개정	1979. 3. 8	개정
1979. 4. 30	개정	1981. 2. 28	개정
1982. 3. 1	개정	1984. 9. 1	개정
1986. 5. 28	개정	1987. 5. 30	개정
1988. 5. 31	개정	1990. 5. 29	개정
1995. 5. 26	개정	1996. 6. 1	개정
1998. 9. 29	개정	1999. 5. 27	개정
2000. 5. 30	개정	2001. 5. 30	개정
2001. 9. 28	개정	2002. 6. 27	개정
2003. 6. 11	개정	2004. 6. 15	개정
2005. 6. 15	개정	2007. 6. 14	개정
2008. 6. 12	개정	2009. 6. 12	개정
2012. 6. 13	개정	2013. 6. 14	개정
2014. 3.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Reinsurance Company(약호 Korean Re)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호에 관련되는 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손해보험 재보험의 출수재 업무
2. 생명보험 재보험의 출수재 업무
3. 해외에 있어서의 보험업무
4. 기타 권한있는 경제부처의 장 또는 금융감독기관이 승인하는 보험업무
5. 보험금 지급을 위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재산 이용
 - 가.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및 그 이용
 - 나.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 다. 대출 및 어음의 할인
- 라. 예금
- 마.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신탁
- 바. 기타 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국내외에 필요한 곳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지점, 사무소, 대리점 또는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nr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주식총수와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억 2,000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

제6조(설립당시의 발행주식수) <삭 제>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7조의 2(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전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 또는 주주이외의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7조의 3(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7조의 4(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5(주식매수선택권) ①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수사기관에의 통보조치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5.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⑩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성과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주식의 명의개서) ①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를 개서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의개서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명의개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본 회사주식의 명의개서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절차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명부와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둘 수 있다.

제9조(질권 설정과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①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이나 표시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전질 또는 이전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0조(주권의 재교부) 본 회사의 주권의 재교부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부분
2. 주식의 오염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그 주권, 그러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중요한 사항을 식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서류
3. 다른 주권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권

제11조(주주의 신고사항) ①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상호와 대표이사),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본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주식의 명의개서 등의 정지) 본 회사는 매 영업년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에 관한 등록 및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주간전에 공고한 후 상당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주주총회 소집 및 의장) ①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영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의 2(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경영 참고사항 및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16조(의결권의 대리) ①주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록) ①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17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이사와 이사회

제18조(이사) ①본 회사의 이사(상근감사위원 포함)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이사회에서는 회장, 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⑤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④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사의 보궐선임)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1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발생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해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

②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의 보수)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는 이사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23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본 회사의 주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②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의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제24조(이사회 의장과 소집)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각 이사에 대하여 회일 1일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위원회)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

제2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2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⑨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계산

제29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본 회사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간전 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영업년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2조(주식의 소각) <삭 제>

제33조(주주배당금의 지급) ①본 회사의 이익배당은 매 영업년도말 현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전항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제3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설립비용과 그 상각) 본 공사의 설립비용은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본 공사가 이를 부담하여 설립 이후 5개년 이내에 이를 분할상각한다.

②(제1차 사업년도) 본 공사의 제1차 사업년도는 본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6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1963년 1월 29일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감사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4, 제11조, 제17조, 제21조, 제21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32조 제1항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9조는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하며, 2013회기 사업연도는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손해재보험공사 설립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재무부관 김 정 럽
차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국가재건최고회의
해군준장 김 교 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재무부관 이 철 승
기획조정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재무부관 문 영 훈
이재국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문 상 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장 이 호 상

이사회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권한)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회는 각 이사 및 집행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 3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제 5 조(감사위원회의 보고 등)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의장 및 소집)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1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의결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인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 9 조(의결사항)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 소집과 부의의안
- (2) 정관의 변경
-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 (6)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 (7)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 (8) 대표이사의 임면
- (9) 이사의 겸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1) 준법감시인의 임면
- (2) 선임계리사의 임면
- (3) 집행임원의 임면 및 보수 총액
- (4) 이사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칙, 감사위원회규칙,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 보상위원회규칙, 직제규정, 집행임원제도운영규정, 내부통제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중간정산규칙, 성과보상체계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과 개폐
- (5)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 (6) 출자를 위한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 (7)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유가증권 대여
- (8) 부동산 취득 및 처분
- (9) 점포의 설치, 이전 및 폐쇄
- (10) 추정계약금액 30 억원을 초과하는 단일계약의 체결(보험계약 제외)
- (11) 중요한 소송 및 중재로서 당사 책임금액이 5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 사업계획, 예산의 편성
- (13)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임면. 단,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14)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재결의할 수 없다.

(15)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 조(보고사항) 이사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관한 사항

제 11 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위임)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각종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 조(긴급조치) 대표이사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의결없이 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소집되는 최초의 이사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의사록) ①이사회는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②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장소 및 일시

2. 출석 또는 결석한 이사회는 구성원 및 기타 출석자의 직위, 성명

3. 회의사항

4. 결의사항

5. 기타사항

제 15 조(간사) 이사회는 간사는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이사회는 회무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8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9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6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개 정 연 혁

연번	개정(시행)일	연번	개정(시행)일
1	1979. 4. 30	16	2012. 6. 13
2	1981. 2. 28	17	2013. 4. 30
3	1985. 4. 1	18	2013. 6. 14
4	1994. 6. 1	19	2013. 9. 27
5	1996. 12. 1	20	2014. 6. 13
6	2000. 7. 19	21	2014. 9. 25
7	2000. 9. 15		
8	2002. 5. 13		
9	2003. 6. 11		
10	2003. 11. 17		
11	2004. 4. 1		
12	2004. 10. 1		
13	2005. 12. 15		
14	2007. 6. 14		
15	2009. 6. 12		